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68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김대식·김준혁·서지영
김용태·정성국·박형수
김동아·황명선·서일준
이수진·김문수·서영석
윤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

지).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인재”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해외 인공지능인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 나.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인공지능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인재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인공지능인재 육성 기본계획 등

제5조(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공지능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대학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인재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및 지원 방안
4. 인공지능인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인재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수급 동향
2. 인공지능인재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3. 인공지능 관련 학사·석사·박사의 재학·졸업 현황 및 경력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
5. 대학등의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인공지능인재를 육성·활용하는 대학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인공지능인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기업 인공지능인재 개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
 - 3. 인공지능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인재 육성 기반 조성

제9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생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이하 “인공지능분야”라 한다)를 전공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용

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분야를 교육하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의 대상·범위, 생활비 용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 연구 대학원생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및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분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의 대상·범위, 생활비 지원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인공지능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인공지능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등은 시설·장비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특성화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요건·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 인공지능인재 개발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인재의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기업 인공지능인재 개발기관(이하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폐쇄 사실을 교육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교육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활동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⑤ 그 밖에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 육성 혁신센터(이하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 등 산업계의 인공지능인재 활동의 지원
2. 국내외 인공지능인재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3.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인재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 인공지능인재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3. 인공지능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및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공지능인재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인재 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공지능인재의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

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인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인공지능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인공지능인재의 이직·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5.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6. 국가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인재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7.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관리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그 밖에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의 설치) ① 협회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

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인재의 상생협력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2. 인공지능인재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 인공지능인재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인공지능인재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인재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해외의 우수한 인공지능인재 유치에 관한 사업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장 인공지능인재 육성 사업 등 추진

제18조(인공지능인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

취업상태에 있는 인공지능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공지능인재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이 인공지능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인재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인공지능 지역인재의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

능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 육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인공지능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① 국가는 해외 인공지능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인공지능인재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 인공지능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해외교류·연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인재의 해외교류·연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교류·연수사업의 대상자 선정·지원사항·대상자의 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공지능인재의 재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분야 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분야 첨단 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인재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인재의 재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교육등의 실시 기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 취소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인공지능인재협회가 아닌 자는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인공지능인재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